

#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영 주 시

## 영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 52
----------	------

제출년월일 1996. 1. 6.  
제출자 영주시장

### 1. 제안이유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안 제2조)

- 본부장 : 시장
- 차장 : 부시장
- 통제관 : 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
- 담당관 : 재해대책업무 담당과장
- 실무반 : 관련공무원, 관계기관 임원

#### 나.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안 제3조)

- 관련기관 공무원 및 임원

#### 다. 재해대책 본부회의 협의사항(안 제4조)

-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3. 제정조례 (안) : 덧붙임

#### 4. 참고자료 : 덧붙임

- 조례 표준안 1부
- 관련법규(발췌) 1부

## 영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재해대책본부(이하 "재해대책본부"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②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시 관련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동으로 한다.

제3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대위급 장교를, 경찰 공무원의 경우는 경감급 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이 없는 기관은 6급이하 공무원으로도 할 수 있다) 또는 임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영주시
2. 영주경찰서
3. 육군제3260부대3대대
4. 영주교육청

5. 한국통신 영주전화국
6.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7. 영주지방철도청
8. 영주지방노동사무소
9. 영주기상관측소
10.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재해기간 파견근무)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6.15 ~ 10. 15)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 공무원과 임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해대책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인 생 략”

## 경 상 북 도

우 702 - 702 대구 북구 산격동 1445-3 / 전화(053) 950-3643 / 전송(053) 950-3649 / 담당 : 송덕만

1

2

문서번호 치수 12101 - 15

시행일자 1996. 7. 4. (3년)

경 유

받 음 시장, 군수

참 조 건설과장

선 결	시 장	지	
접	일자	시	
	시간	1996. 07. 05	결
수	번호	내비	자
	처 리 과		재
	담당자	113	공
			자
			재

제 목 ○○시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관한조례표준안 시달

1. 제대 12101 - 99 ('96. 6. 14) 호와 관련입니다.

2.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3. 시군재해대책본부원 구성,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협의사항 등을  
규정한 「○○시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관한조례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자체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조속제정 시행하기 바랍니다.

붙 임 : ○○시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관한조례표준안 1부. 끝.

경 상 북 도 지 사

[ 치 수 과 장 전 결 ]

## ○○시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표준(안)

○○시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재해대책본부(이하 "지방재해대책본부"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②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시·도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등으로 한다.

제3조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4급이상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중령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총경급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시·도
2. 지방경찰청
3. 향토사단
4. 시·도교육청
5. 지방체신청
6. 지방국토관리청
7. 지방철도청
8. 지방해운항만청
9. 지방노동사무소(지방사무소)
10. 지방기상청

10. 기타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시·도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재해기간 파견근무)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6. 15~10. 15)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징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 고 자 료(관련법령 발췌)

###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등)** ① 시·도재해대책본부 및 시·군·구재해대책본부(이하 "지방재해대책본부"라 한다)에 각각 본부장 1인 및 차장 1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

② 시·도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시자가 되고, 차장(이하 시·도차장"이라 한다)은 부시장·부지사(부시장·부지사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가 된다.

③ 시·군·구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차장(이하 "시·군·구차장"이라 한다)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④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지방재해대책본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본부장" 또는 "중앙본부장"은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으로, "차장"은 "시·도차장" 또는 "시·군·구차장"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지방재해대책본부"로, "대통령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 ①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제10조(제2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

②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재해대책본부의 차장은 특별시의 경우 행정(2)부시장이, 광역시 및 도는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지방재해대책본부는 다음의 사항을 관掌한다.

1. 관할구역안의 재해용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2.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관할구역안의 재해예방·재해용급대책·재해복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협의사항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정한다.

####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등에관한규정

제3조(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 ①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동일한 재해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및 동산의 피해액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특별시의 구 : 20억 원
2.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이상의 시·군 : 11억 원
3. 인구 30만미만의 시·군 : 7억 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를 지원하는 때에는 피해를 입은 모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당해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동항 제2호가목 내지 바목과 동항 제3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소의 피해액이 5천만원이상인 공공시설의 복구로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은 지방상수도를 격일제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조(국고의 추가지원)** ① 별표1의 부담율과 법 제62조제2항 및 이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령에 의하여 산출한 시·군·구의 부담총액이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대규모 재해 또는 누적되는 재해의 발생으로 피해가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는 재해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재해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지원외에 재해복구비용중의 일부를 국고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해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재해대책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은 별표1을 준용하되 동표중 국고는 지방비로, 의연금은 지방재해구호기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비 부담금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추가지원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금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